

제4권 제2호

2013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관리행정조직

■ 김윤태 · 예성호

다문화가족 해체와 지원방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박신규 · 조아영

화교학교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

■ 두언문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3년 제4권 제2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이철우 (연세대학교)

차기회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부 회 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감 사 이충훈 (서강대학교)

송 영 훈 (서울대학교)

이 사

총무이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편집이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연구이사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기획이사 서정민 (연세대학교)

섭외이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이사 김현미 (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3년 제4권 제2호

연구논문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관리행정조직 김윤태 · 예성호	5
다문화가족 해체와 지원방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박신규 · 조아영	27
화교학교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 두언문	51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69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77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81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83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89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병하(서울시립대)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고재훈(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4 No.2 2013

Contents

ARTICLES

- Chinese Immigration Policy and Foreigner Administration System
| Yuntae Kim, and Sounggho Ye
 - Multicultural Family's Dissol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ocusing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Jeollabuk-do
| Shinkyu Park, and Ayoung Jo
 - Phenomenon in the Entrance of Korean Students into Huaqiao Schools
| Yen-Wen Tu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연구논문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관리행정조직

김윤태* · 예성호**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정책의 변천사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관리체제의 특징을 논의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중국의 외국인 정책은 개혁개방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 당시 외국인을 강제 추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제한적이지만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외국인 관리행정체제에 있어서 중국은 공안부가 전담하고 기타 관련 부서가 협조하는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제어: 중국, 외국인정책, 외국인 관리체제

I. 서언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구 압박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민역사와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외국인 정책, 외국인 유입에 대한 역사, 외국인 관리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차원의 관리체제 구축은 청말 혹은 중화민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역량이 외국인 관리에까지 미칠 형편이 되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방임상태였다. 그 후 1949년 중국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이러한 형편은 빨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까지 중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runtai@dongduk.ac.kr.

** 중국 남경재경대학(南京财经大学) 신문학원(新闻学院) 전임강사. seize1213@daum.net.

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구소련과 동구 국가의 사람들로 그 수 또한 많지 않았다.¹⁾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그 국적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개혁개방과 WTO에의 가입은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대량유입을 촉진했으며, 외국인의 장기적인 정주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公安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외국인의 입출국은 모두 521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2%가 증가했고, 불과 9년 전인 2001년의 2239만 명보다는 133%나 증가했다(潘向洵·秦总根, 2011: 1). 이렇게 외국인의 대량유입이 현실화되었지만, 중국의 외국인 정책은 아직도 여전히 보수적이고 국제화가 비교적 덜 진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정책의 변천사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관리체제의 특징 등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의 집필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웹사이트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주요 자료들, 그리고 기타 학술연구 문헌 등의 문서자료를 참조하였다.

Ⅱ.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실험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즉 사회주의로의 사회개조를 강조한 마오쩌둥식의 ‘사회주의 개조’ 패러다임과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식의 ‘개혁개방’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외국인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중국의 외국인 정책은 ‘대부분 축출’에서 ‘제한적 허용’의 변화과정을 경험한다. “집 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다시 손님을 받아들이자”라는 구호는 갓 건국한 중국의 3대 외교방침 중의 하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고 또한 제국주의의 특권과 그 영향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국公安부는 중국 전 지역의 외국인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구분하여 축출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즉, 일부 필요한

1) 여기에서 중국은 1949년 이후 중국대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칭한다. 이후 중국으로 통칭한다.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축출하는 ‘축출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명의 외국인이 축출되었다고 알려진다. 당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상하이의 경우, 194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당시 상하이 거주 외국인 55,944명 중 절대다수인 5만 5천여 명이 차례대로 강제 출국당했다. 1979년 말까지 상하이 거주 외국인은 겨우 770명이었는데, 그중에는 조선인, 월남인, 몽골인 등이 약 300여 명 포함되었다(柯卫·雷宏, 2009: 65-69).

이러한 ‘축출정책’ 하에서 중국거주 외국인과 중국방문 외국인은 날이 갈수록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많지도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했다. 외국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국은 일련의 외국인 관리 법률을 반포했다. 1951년 반포된 ‘외국인 거류 등기 및 임시규칙’, 1954년 반포된 ‘외국인 출국 임시방법’, ‘외국인 거류 등기 및 거류증 비자발급 임시방법’, 그리고 ‘외국인 여행 임시방법’, 1964년 반포된 ‘외국인 입국 출국 경유 거류 여행관리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경유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개혁개방 전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단지 다음과 같은 네 종류에 불과했다. 즉 공식적 외교 인원과 그 친속, 중국을 원조하는 소련 전문가, 중국의 우호 국가에서 파견한 제한된 수량의 유학생, 그리고 현지정부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난한 공산당원 혹은 좌파인사 등에 불과했다. 이렇게 혁명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농후한 ‘축출정책’은 외국인 이민을 말소시키기에 충분했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 시행했던 ‘축출정책’과는 달리 제한적이지만 개방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반포된 ‘외국인 입출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중국 정주, 장기 혹은 영구적 거류를 조건부로 허가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외국인은 비록 개혁개방 전의 축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각종 제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의 문이 처음 열리고 인구 유동의 주요 방향은 중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었다. 중국에 들어와 장기 혹은 영구적으로 거류를 하는 외국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1980년 상하이 거주 외국인은 겨우 624명에 그쳤는데, 1985년 약 3,000명으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4,110명으로 늘어났다(李明欢, 2011: 326).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증가추세는 90년대 들어서 대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이 결정되자 개혁개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수적 규모 역시 수직적 상승을 시작했다. 1993년 상하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만 1천 명이었으나 2005년

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13만 8천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柯弘·雷宏, 2009: 69).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혹은 영구거류의 신분획득을 요구하는 외국인 역시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8월 15일公安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심사 비준 관리방법’을 반포함으로써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구 거류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화된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여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급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통해 볼 때, 중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문턱은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매년 중국의 그린카드를 획득하는 외국인이 불과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까지, 중국은 제국주의 식민지 역사의 기억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줄곧 외국인의 중국거주와 국적취득에 대해 배척과 경계, 보수적 태도를 견지했다.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후, 외국인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모종의 경계 심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21세기 초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그린카드’의 문을 열어주긴 했으나 ‘귀화와 국적취득’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물결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세계 각국의 지적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Ⅲ. 외국인 현황: 구성과 분포

1. 중국거주 외국인의 구성

중국의 정치 경제적 지위의 상승추세와 미국의 상대적인 쇠락으로 중국에서 경제 활동, 학업, 여행, 정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여 외국인 집거지역을 형성하기까지 하였다. 베이징[北京]의 ‘코리아타운’, 이우[义乌]의 ‘중동거리’, 광저우[广州]의 ‘초콜릿타운’, 궈시베이[桂西北]의 ‘베트남 신부’등과 같은 외국인 집거지역의 존재는 세계인의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충분히 확인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李明欢, 201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거주 외국인은 단기 체류[短期停留], 장기거류[长期居留], 그리고 영구거류[永久居留]의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단기체류는 주로 중국에서 여행하거나 친인척 방문,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장기거류는 유학, 취업, 투자의 목적으로 거류하는 인원으로 1-5년의 복수비자와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를 말한다(外交部网站, 2013).

‘정주[定居]’와 영구거류[永久居留]는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중에서 동시에 사용되던 두 개의 개념이다. 당시 중국에서의 정주를 허가한 주요 대상은 가족 상봉자였으며, 영구거류 자격의 부여는 고급인재 외국인과 중국에 특수한 공헌을 한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개념으로써 정주와 영구거류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특히 정주와 영구거류를 허가받고 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허가관리방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재중국 영구거류’로 통칭하였고, 발급하는 증서 역시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지 않고 영구거류의 개념만을 사용할 것이다(全国公安机关发布信息网, 2013).

2011년 공표한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경내에 거주하면서 인구센서스에 등록된 홍콩, 마카오, 대만을 비롯한 외국인은 모두 102만 명이다. 그중 중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체류자는 인구센서스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의 68% 정도에 해당하는 68만 명이고, 정주를 목적으로 한 자는 186,648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양안 3지역’ 출신을 포함한다.²⁾ 만약 이 양안 3지역 출신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총 102만 명 중 순수 외국인은 겨우 59만 4천 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순수 외국인과 양안 3지역 출신, 이 두 집단 중 중국체류기간 1년 이상인 자의 비중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중국 체류 1년 이상 외국인은 아마도 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겨우 40만 명 정도의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인 셈이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450만 명을 초과하는 중국인이 해외로 이민한 수치와 비교한다면, 이 40만 명의 규모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또 다른 각도로 분석해도 이와 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10년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 중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인구의 0.1%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의 13.5%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일본의 1.7%, 인도의 0.4%, 태국의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다(张静, 2011). 이는 중국의 외국인 이민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양안 3지역’이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처지에서 이들 지역을 개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 논문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편의상 이 원칙에 따라 이들 지역을 양안 3지역으로 통칭한다.

중국은 외국인 이민 수입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영구거류권(속칭 중국의 그린카드)을 획득한 외국인 수 역시 여전히 많지 않다. 1985년 외국인의 장기거주 혹은 영구거류권을 개방한 후에도 진정으로 중국의 영구거류권을 획득한 외국인 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04년의 자료에 근거하면,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심사 비준 관리방법’의 실시 이전, 중국 정부는 모두 3,000여 명의 영구거류권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 관리방법을 실시한 지 6년이 지난 후에도 대략 1,000명 정도의 외국인만이 중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했다(张静, 2011). 다시 말해서,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5,000명이 채 안 되는 외국인만이 중국의 영구거류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13억을 넘어선 중국 인구와 천만 명을 넘어선 중국인의 해외 이민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미한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미미한 비중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외국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2. 중국거주 외국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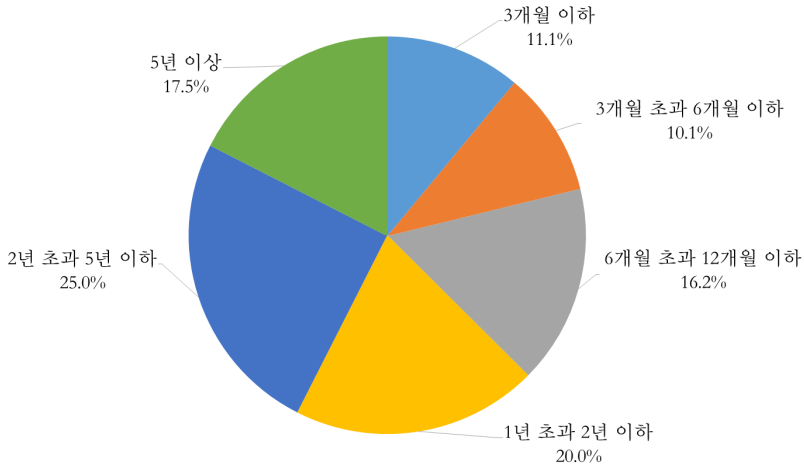
중국의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³⁾ 중국 경내에 거주하면서 조사에 임한 외국인은 593,832명이었다. 그중에서 남성은 336,245명, 여성은 257,58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거주기간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65,708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의 11%를 차지하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60,155명으로 전체의 10%, 반년에서 1년까지는 96,494명으로 전체의 16%, 1년에서 2년까지는 119,022명으로 전체의 20%, 2년에서 5년까지는 148,471명으로 전체의 25%, 5년 이상인 외국인은 103,982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그림 1).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장기거주자로 분류할 경우, 장기 거주자는 전체의 63%에 달한다. 이는 중국거주 외국인의 장기거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중국거주 외국인의 체류목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기체류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비즈니스(商务)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108,716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8%를 차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134,889명으로 전체의 23%, 학업 목적 체류자가 153,608명으로 전체의 25%, 정

3)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제6차 인구센서스는 처음으로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출신 주민과 외국인을 조사범위에 편입시켰다. 조사는 조사 시점에 중국의 경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혹은 3개월 이상을 거주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출장이나 여행 등 단기체류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경내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양안 3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중국 국경의 내부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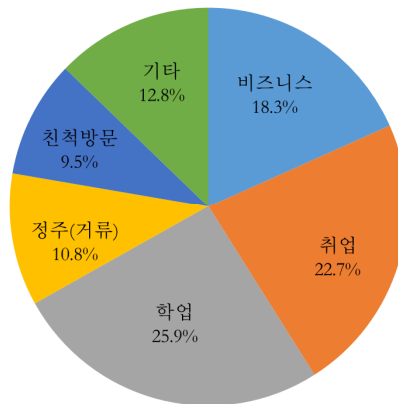
주(거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64,179명으로 전체의 11%, 친척방문 목적이 56,527명으로 전체의 10%, 기타 목적이 75,913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학업, 취업,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보아도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장기체류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중국거주 외국인의 거주기간별 분포, 2010년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4 按已在大陆或在华居住时间分的境外人员.

〈그림 2〉 중국거주 외국인의 체류목적별 분포, 2010년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3 按来大陆或来华目的分的境外人员.

〈표 1〉 중국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2010년

지역	명	%	지역	명	%
전국	593,832	100.0	중난(中南)	109,387	18.4
화베이(华北)	118,381	19.9	허난(河南)	1,610	0.3
베이징(北京)	91,102	15.3	후베이(湖北)	8,065	1.4
톈진(天津)	21,041	3.5	후난(湖南)	2,079	0.4
허베이(河北)	2,748	0.5	광둥(广东)	74,011	12.5
산시(山西)	621	0.1	광시(广西)	21,465	3.6
내몽골(内蒙古)	2,869	0.5	하이난(海南)	2,157	0.4
둥베이(东北)	35,355	6.0	시난(西南)	56,991	9.6
랴오닝(辽宁)	22,723	3.8	충칭(重庆)	3,327	0.6
지린(吉林)	5,918	1.0	쓰촨(四川)	6,655	1.1
헤이룽장(黑龙江)	6,714	1.1	구이저우(贵州)	635	0.1
화둥(华东)	263,325	44.3	윈난(云南)	45,801	7.7
상하이(上海)	143,496	24.2	티베트(西藏)	573	0.1
장쑤(江苏)	30,928	5.2	시베이(西北)	10,393	1.8
저장(浙江)	26,765	4.5	산시(陕西)	5,078	0.9
안후이(安徽)	2,355	0.4	간쑤(甘肃)	912	0.2
푸젠(福建)	27,386	4.6	칭하이(青海)	453	0.1
장시(江西)	2,223	0.4	닝샤(宁夏)	339	0.1
산둥(山东)	30,172	5.1	신장(新疆)	3,6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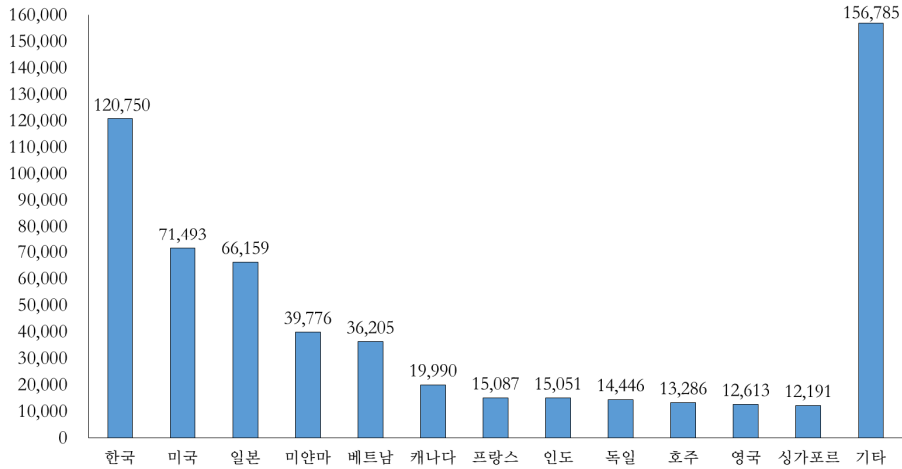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1 按地区分的境外人员

또한, <표 1>에서 중국거주 외국인의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상하이에 143,496명, 베이징에 91,102명, 광둥에 74,011명, 윈난에 45,801명, 장쑤에 30,928명, 산둥에 30,172명, 푸젠에 27,386명, 저장에 26,765명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중국의 내륙보다는 대도시를 포함한 동남부 연해의 발전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6대 지리구(中国地理区划)로 재분류하면, 화둥(华东) 44.3%, 화베이(华北) 19.9%, 중난(中南) 18.4%, 시난(西南) 9.6%, 둥베이(东北) 6.0%, 시베이(西北) 1.8%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20,75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인이 71,493명, 일본인이 66,159명, 미얀마가 39,776명, 베트남이 36,205명의 순으로 분포했다(그림 3). 인접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출신 외국인이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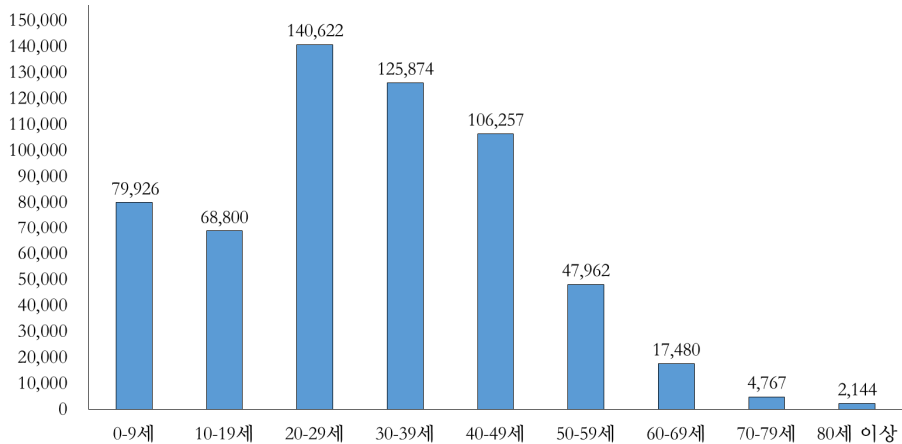
<그림 4>는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층인 20대가 140,62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대에서 40대까지가 전체 외국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국거주 외국인의 출신국별 분포, 2010년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6 按国籍分的境外人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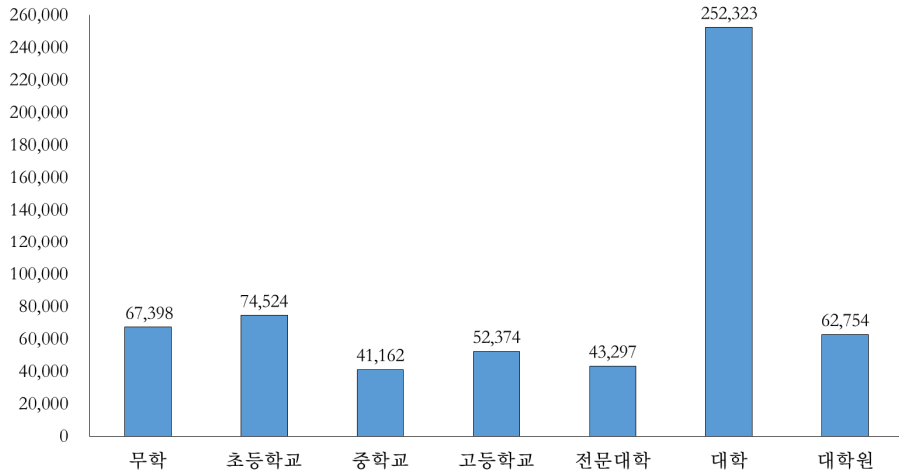
〈그림 4〉 중국거주 외국인의 연령별 분포, 2010년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2 按年龄·性别分的境外人员.

〈그림 5〉는 중국거주 외국인의 학력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593,832명 중 25만여 명이 대학 본과 출신이며, 6만여 명은 대학원 출신으로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을 지닌 외국인의 수가 전체 외국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학력 전문직 종사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5〉 중국거주 외국인의 학력분포, 2010년



자료: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 编(2011). 附录2 第六次全国人口普查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数据. 2-5 按受教育程度分的境外人员.

요컨대, 중국거주 외국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류기간으로 볼 때 1년 이상 체류한 장기 거주자가 전체의 63%에 달하며, 전체의 50% 이상이 학업, 취업, 정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거주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 내륙보다는 대도시를 포함한 동남부 연해의 발전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출신 외국인이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력 또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IV. 외국인 관리행정체제

1. 외국인 관리행정 제도의 함의

외국인은 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킨다. 중국의 출입국 관리 중 외국인의 개념은 주로 중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연인을 가리키며,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인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외국인 관리행정 제도는 제도화된 외국인 관

리체제 및 외국인 권리의무관계의 총화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제도화된 외국인 관리행정 체제, 즉 정부의 외국인 관리상의 분업, 기구설치, 인원 배치와 행정절차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 즉 외국인 국적의 확인, 외국인의 외교적 지위 확인,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사유 확인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다음,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 즉 외국인 대우제도, 외국인 입국과 경유 비자제도, 거류 제도와 거류권 제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제도와 난민제도를 포함한다.

2. 외국인 관리 행정체제의 특징:公安部 전담

중국의 외국인 관리 행정체제는 다른 국가가 이민청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公安部(公安部)와 외교부(外交部)가 전담하고 기타 관련 부서가 사안별로 협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公安部와 외교부를 주관기관으로 삼고, 교육부(國家教育委員會), 노동부(勞動部),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상무부(商務部),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국가관광국(國家旅遊局), 민정부(民政部) 등을 보조 관리기관으로 삼아, 각각 서로 다른 외국인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리업무는公安部 출입국관리국이 책임지고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 외국 주재 영사관은 중국 국경 밖 외국인의 입국, 경유 등 비자의 신청, 입국 정주(定居)의 신청, 외국인의 신분확인 등의 관리업무를 전담한다. 다음으로公安部 출입국관리국은 항구에서 외국인의 입국비자, 외국인의 입출국 변방(邊防)검사를 전담하며, 내지에서 이미 입국한 외국인의 재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동시에公安部 출입국관리국은 또한 중국 경내의 외국인의 비자 연기, 거류자격 심사, 거류 관리, 여행관리와 출국관리 등 다량의 외국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 노동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관광국, 민정부 등 부서는 중국 내 외국인이 거류기간 중 유학, 취업, 경제활동, 투자, 관광, 원조 등 구체적 업무에 관련되었을 때 외국인의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중국의 외국인 관리체제는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외국인 관리업무는 경찰기구인公安 부서를 주관기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혹은 출입국관리국이라고 칭하는 전문화된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이러한

전문화된 관리행정체제는 한편으로는 출입국관리와 국가외사권의 행사에 유리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출입국 관리업무의 전개에 유리할 수 있다.

3. 외국인 신분확인제도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외국인 관리행정 제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의가 있다. 외국인 신분에 관한 확인은 외국인에 대한 향후 관리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를 결정하는 선행요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신분확인제도는 주로 외국인의 국적확인, 외국인의 외교적 지위 확인,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사유 확인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의 국적확인에 관하여, 중국은 자국의 국적법에 근거하는 외에도 가입된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예를 들면, 1930년의 ‘국적법 충돌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 즉, 헤이그 협약 및 1954년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중국 역시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적확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의 외교관 신분에 관한 확인은 외교관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 외교특권 혹은 영사 보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중국은 1946년의 ‘연합국 특권과 사면협약’, 1947년의 ‘전문기구특권과 사면협약’, 1961년의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과 1963년의 ‘비엔나 영사관계 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 신분에 관한 확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의 입국 사유에 따른 신분확인은 외국인이 입국한 후의 체류, 거류 관리의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입국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그 사유를 비자 상에 밝혀둔다.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신고하고 허가된 입국 사유는 곧 외국인의 입국 사유에 따른 신분이 된다. 외국인은 입국 후 반드시 입국 사유 신분에 따라 상응하는 활동을 해야 하며 입국 사유 신분과 일치되지 않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행사 유로 비자를 신청하고 여행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 방문, 선교 등 기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역시 중국은 세계 각국의 제도와 기본적으로 일치된 원칙에 의해 관리한다.

4.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제도

1) 외국인 대우와 관련된 제도

외국인 대우와 관련된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민 대우, 차등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포함한다. 외국인에게 국민 대우와 차등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본국 국민과 같다면 국민 대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본국 국민보다 낮으면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본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최고 대우의 기준은 국민 대우이며 중국 역시 이와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 대우를 한다 해도 그 대우의 기준은 정치적 권리 이외의 권리에 국한한다. 즉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기타 권리에 대한 국민 대우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집회, 시위와 결사 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 건강, 재산, 존엄과 인신 자유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중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중국 법률의 보호와 제약을 받게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인 대우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비교적 완전한 국민 대우를 한다. 예를 들면 홍콩 거주권을 가진 주민은 중국 국적의 소유 여부를 막론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홍콩 거주 외국인은 비준을 거쳐 결사와 정기 집회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완전한 국민 대우를 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 차등대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등 대우의 범위와 정도는 일반적으로 국제관례, 국제협약, 국가 간의 조약과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국외추방의 처벌은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본국 국민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비록 중국이 취업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갈수록 확대 개방하지만, 여전히 차등대우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예이다.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자국민 대우를 초과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선진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갖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본국 국민보다 우선하는 소위 초 국민 대우를 하는 예도 있다.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의 인신 자유에 대한 처벌과정도 본국 국민보다 복잡한 것 등이 바로 초 국민 대우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것은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동일국가 내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적에 따라 차등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모든 WTO 가입 회원국과 경제무역 방면에서 서로 최혜국대우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 또한 일련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입국비자 제도와 출국제도

입국관리는 외국인의 입국, 입국비자의 발급과 외국인 입국 불허 및 비자발급 제한 등을 포함한다. 출국관리는 외국인의 정상적인 출국, 출국 제한 및 강제 출국 등을 포함한다.

비자는 국가 주권의 구체적 표현으로, 주권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허가 혹은 경유허가의 증명을 발급해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목적지 외교부서의 입국비자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목적지의 국경에서 현지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목적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 각국은 ‘블랙리스트’상에 등록된 외국인의 본국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비자표준은 서로 대등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선진국 간에는 보편적으로 상호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EU 회원국 간 무비자 협정, 홍콩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단기 무비자 협정 등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예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극히 일부 국가만이 중국의 공무여권 소지자에게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어느 나라도 중국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면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호혜평등의 국제교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역시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입국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관광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관리에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특구 내에서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난다오(海南島)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또한 탄력적 운용의 대표적 예이다.⁴⁾ 하이난다오는 중국의 성급 지역이긴 하지만 해협을 사이로 중국 본토와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대외지향적 외국인 관리제도를 수용하기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이난다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의 입출국을 편리하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국제화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龍章安, 2005). 편리한 입국방식으로 외국인의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본국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방식은 이미 전 세계의 추세가 되었다.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출국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법률을 준수했고 비자

4) 하이난다오에 입국할 경우, 5인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4인 이하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하이난으로 입국하여 하이난에서 출국하는 경우는 선박이나 국내선을 이용 중국 내지 여행에 있어서도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유효기간 내에 자동으로 출국했다는 의미이다. 국제적으로 외국인의 정상적인 출국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다만 극소수의 국가만이 외국인의 출국 시 출국허가를 요구한다. 대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는 “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라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이다(王铁崖, 1981).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이 민사, 경제적 마찰, 혹은 범죄혐의 등에 연루되어 있으면,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통지하여 잠시 그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인의 강제 출국은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양국의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체류기한을 단축해 조기 출국시키거나 혹은 직접 강제 출국시키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3) 경유와 체류제도

외국인의 경유는 외국인의 여행목적지가 해당 국가가 아니지만, 반드시 해당 국가를 거쳐야 하거나 혹은 경유를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위해(危害)가 없는 상황에서 비자의 허가를 거쳐 해당 국가를 거치거나 잠시 체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경유 체류 시간은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체류제도는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단기 체류하는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체류 기간은 6개월 이내가 된다. 단기 체류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여행 관광, 무역상담, 친척방문 등 단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도시의 민가에서 투숙할 경우 도착 24시간 이내에 민박 주인 혹은 투숙인 본인이 투숙인의 여권과 민박 주인의 호적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 임시숙박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72시간 이내에 현지 파출소 혹은 호적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공민이 상주하는 지역의 시·현 범위 이외의 도시에서 3일 이상을 머물 경우, 임시거주지의 호주 혹은 본인은 3일 이내에 호적등록기관에 임시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이상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에 3일 이상 단기 체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임시거주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혁개방 후의 글로벌화와도 어울리지 않지만, 집행 또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대만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4) 거류 제도

거류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고 입국하여 입국 사유의 원인에 의해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을 가리킨다. 거류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유학, 비즈니스, 취업, 배우자 등 장기적인 사무와 관련된다. 국제적으로 거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엄격하다. 거류 제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유학제도, 외국인 취업제도 그리고 외국인의 여행제도를 포함한다.

(1) 유학생 관리: 과거,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학교에서 집중거주하며 관리를 받았다. 그들의 학습과 생활은 모두 각 학교가 주요 활동 범위였다. 비록 외출과 면회 등에 관련된 제도 때문에 외국 유학생과 관리자가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 유학생 관리는 그래도 질서와 효율이 담보된 환경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거주 지역 개방은 필연적인 사회적 추세가 되었고, 외국인 유학생 거주 지역 개방에 따라서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사회의 산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유학생의 거류증, 비자 기간 초과와 관련된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새로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특히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관리가 비교적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역시 외국인의 취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2) 여행자 관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진입한 후, 응당 법에 따라 중국의 경내에서 그 입국 사유에 따라 여행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단기 여행으로 비자를 면제받고 선전, 주하이 지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선전과 주하이를 떠나 중국 내륙의 기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중국에서 외국인이 비 개방지역을 여행하려 하면 공간기관에 ‘외국인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5) 거류권 제도

중국의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거류권’과 ‘거류’를 혼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며 거류권 제도와 서류 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중국의 거류(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통용되는 거류권 제도의 의미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즉 중국에서의 거류와 거류권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다. 거류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고 특정국에 진입하여 입국 사유에 의해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류권은 영구거류 자격을 갖춘 외국

인이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외국인 거류 제도의 권리와 의무는 외국인이 입국 사유와 일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 체류하는 자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이다. 그러나 외국인 거류권 제도의 권리와 의무는 여기에 더하여 거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비자를 받지 않고 거류국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또한, 더욱 많은 의무와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정치적 권리와 의무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연속적으로 7년 이상을 거주한 외국인은 홍콩지역의 거류권을 가지며 홍콩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게 된다. 거류권을 가진 외국인은 ‘홍콩재입국증[回港證]’을 가질 수 있으며, 홍콩지역의 변경을 출입할 때도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규정에 근거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임시거류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국인 (임시) 거류증’의 적용 범위는 중국에서 반년 이상을 체류한 각종 입국 신분의 외국인을 포함할 정도로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외국인 (임시) 거류증’의 권리 내용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그 권리는 겨우 취업, 유학, 결혼 등 체류자격과 중국의 개방지역에서의 여행과 이사 등의 내용에 국한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류권’의 내용과는 거의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거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반드시 거류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단지 영구적인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이 비로소 거류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거류권 제도는 단지 거류 제도의 일종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거류(권) 개념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외국인 거류권의 개념과는 일치되지 않는 개념이다.

2004년 중국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 비준 관리법’을 실시하면서,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의 거류권 제도(즉 그린카드 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외국인이 거류국에서 거류권을 취득하고 합법적 거류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을 통상 ‘그린카드’라고 말한다. 이 ‘관리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거류권 제도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류권 제도와 비로소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어떠한 외국인을 막론하고 중국에서 영구거류를 신청하는 전제조건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거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중국입국에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밖에도 ‘그린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점 외에, 취업, 입학, 주택, 출입국,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 등 기타 방면에 있어서 중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의무에 있어서 병역 외에는 중국 국민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구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민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의 ‘그린카드’제도는 비교적 엄격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이민 국가들은 신청자가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갖고 있는가만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노동력이 부족한 이민 국가들은 ‘그린카드’의 비준 조건이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나 비 이민 국가인 중국은 신청자가 중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분명한 공헌을 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그린카드’제도는 주로 국제적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자금 및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중국에서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절대로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이 다른 이민 국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다. 물론 적지 않은 비 이민 국가들의 상황도 중국과 마찬가지로이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 비준 관리법’에 근거하면, 외국인의 영구거류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 대상에 적용된다. 우선, 중국의 경제와 과학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해 중요한 추동 작용을 한 단위에 봉직하고 있는 외국적 고급인재, 둘째, 중국에 비교적 높은 액수의 직접 투자한 외국인 개인, 셋째, 중국에 대해 중대하고도 특출한 공헌 혹은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원, 넷째 부부의 상봉, 미성년자의 부모 의탁, 노인의 친속 의탁 등 가족 상봉 인원이 그 대상이다. 그중에서 친속과 관련된 ‘그린카드’의 발급대상은 그린카드를 획득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조건에 부합되어 중국의 직계친속에 의탁한 외국 노인, 중국인과 결혼하여 만 5년이 되고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만 5년을 거주하면서 매년 9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거류권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와 비교적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민과 난민제도

중국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대량의 외국 이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거류권을 신청하는 데에는 매우 많은 제한이 있으며 중국 국적을 신청하는 조건과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 등 비 이민 국가와 중국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중국의 이민제도를 연구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국제사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국제 난민 사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고 난민관리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난민은 “종족,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혹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본국에 남아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해당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여서 그 본국 이외의 국가 보호를 요구한 사람을 가리킨다(王铁崖, 1981). 1982년 8월 24일 중국은 연합국이 1951년 제정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67년 제정된 ‘난민 지위 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 상황상 제한 없는 난민수용은 불가능하며, 중국의 난민제도는 선택적인 ‘난민정치비호제도’를 채택했다.

1982년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에 의해 피난한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5조에서는 “정치적 원인에 의해 피난을 요구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에서의 거류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중국입국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난민관리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국은 통일적으로 규범화된 난민관리법이 구축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난민에게 정치적 비호를 하는 업무는 국가의 중앙사무에 속한다. 외교부, 안전부, 공안부와 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외교부는 난민의 입국비자를 책임지고, 안전부는 난민의 신분확인 책임을 지며, 공안부는 거류증과 거류 관리를 진행한다. 민정부는 수용업무와 필요한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난민이 갖는 민사 권리와 의무는 기타 외국인과 중국 국민과 기본적으로 같다. 즉 특권을 가질 수도 없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도 않는다. 중국의 난민제도가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V. 결론: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중국이 향후 이민을 지속해서 확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중국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과도한 이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일 인당 평균 자원도 부족하고 현재의 취업압

박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이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찬성의 관점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구밀도는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외국인이 정주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동시에 국민경제와 정치적 환경의 발전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인구가 법률에 따라 규범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이민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그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민법의 제정을 요구한다(严炯, 2013: 128).⁵⁾ 국제적 고급인재의 유치, 기술과 자금의 유치, 그리고 중국의 시장 활력과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이민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행정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의 외국인 행정관리는公安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부처와 조직 간의 조정과 협의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公安부를 중심으로 각 외국인 관리체계의 통제 및 규제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행정의 여러 영역을 하나의 조직 안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정조직 간의 조정과 협의를 기반을 둔 기능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통합조직이 없이 운용되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이 이민국이나 이민청과 같은 독립적 행정관리부서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姜铭(Jiang, Ming). 2011. “依法管理来华外国人问题研究.” 浙江大学硕士论文.
- 柯卫(Ke, Wei)·雷宏(Lei, Hong). 2009. “改革开放三十年上海外国人证件管理的变化.”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 65-70.
- 龙章安(Long, Zhangan). 2005. “关于在海南岛实行外国人免签入境的构想.” 《公安研究》 12: 52-55.
- 李明欢(Li, Minghuan). 2011. 『国际移民政策研究』. 厦门大学出版社.
- 马勇(Ma, Yong). 2010. “外国出入境管理体制概况及启示.” 《法制与社会》 7: 149-151.

5) 严炯. 2013. “为我国经济结构远期调整,应确立移民法律制度.” 《商业经济》 9: 128.

- 潘向泐(Pan, Xianglong)·秦总根(Qin, Zonggen). 2011. “广州外国人犯罪与防控机制研究.” 《政法学刊》 28(5): 84-88.
- 全国公安机关新闻发布信息网(전국공안기관 언론발표 정보망). 2013. “永久居留与定居这两个概念有什么区别?” (www.gov.cn에서 가용. 인터넷; 2013년 12월 12일 접속).
- 外交部网站(외교부 홈페이지). 2013. “外国人在华居留有哪几种类型?” (www.gov.cn에서 가용. 인터넷; 2013년 12월 12일 접속).
- 王铁崖(Wang, Tieya). 1981. 『公民及政治权利国际盟约』. 国际法资料选编.
- _____. 1981. 『关于难民地位的公约』. 国际法资料选编.
- 王阿方(Wang, Afang)·张玉光(Zhang, Yuguang)·李喆(Li, Zhe). 2010. “‘入境热’, 我们准备好了吗?: 广东外国人管理工作面临新挑战.” 《人民公安》 6: 10-17.
- 许敏(Xu, Min). 2008. “外籍人员管理中的政府角色.” 《四川兵工学报》 3: 27-28.
- 严炯(Yan, Jiong). 2013. “为我国经济结构远期调整,应确立移民法律制度.” 《商业经济》 18: 127-128.
- 张静(Zhang, Jing). 2011. “中国‘绿卡’发给谁.” 《决策探索(上半月)》 6: 26-27.
- 庄会宁(Zhuang, Huining). 2007. “‘三非’外国人管理考验政府能力.” 《人民公安》 5: 28-29.
-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국무원 인구센서스사무소)·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计司(국가통계국 인구와취업기획부) 编. 2011. 『中国2010年人口普查资料』.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2013. 10. 10. 접수; 2013. 10. 25. 수정; 2013. 11. 11. 채택)

Chinese Immigration Policy and Foreigner Administration System

Yuntae Kim

Dongduk Women's University

Soungho Ye

Nanjing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The study discussed the changes of policy for foreigners in China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for foreigners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m. It also sought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China's policy for foreigners between before and after reform and opening polic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regim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expelling foreigners by force, but with the adoption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late 1970s, it turned into a policy that allows limited settlement of foreigners. China is characterized by a system in which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is dedicated to foreign administrative affairs and other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 in them.

Key words: China, Chinese policy for foreigners, administration system for foreigners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해체와 지원방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박신규** · 조아영***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중 해체위기에 놓이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실태조사 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해체원인과 과정, 현재적 삶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인 경제적 궁핍, 자녀양육, 체류권, 주거 문제 등을 고찰하고 지원되는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빈곤 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이혼·사별 등 해체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해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

I. 서론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국가적인 글로벌화·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외국 인력의 도입과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2005년 전체 혼인의 13.5%로 정점을 이루다가 매년 감소하여 2011년 9.0%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나

* 이 글은 박신규·이동기·조아영,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13 중 저자들이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kobu84@hanmail.net.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jjor@hanmail.net.

한국인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0.1%(11,495건)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전체 혼인건수 10,458건 중 다문화 혼인 건수 1,12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구성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전북지역 다문화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13.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2.6%의 이혼율보다 높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권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다. 한편 부부간의 평균 연령 차이가 다문화 혼인의 평균 9.5세보다 높은 11.4세를 보여 배우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의 해체 현상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¹⁾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1.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2000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1,605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 332,090건 중 3.5%에 불과했으나 2011년 기준 29,762건으로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9.0%를 차지하고 있다(표 1). 국제결혼의 전반적 추이는 2005년에 13.5%로 정점을 이루다 그 이후부터는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10%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1) 다문화가족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 혹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모두를 포괄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들은 2012년 8,6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97% (8,388명)를 차지하기에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1〉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2000-2011년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전체 국제결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건수	%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	%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4.6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5.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5	8.2	18,750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1.2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2010	326,104	34,235	10.5	26,274	76.7	7,961	23.3
2011	329,087	29,762	9.0	22,265	74.8	7,497	25.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2〉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2009-2011년

구분	전체 혼인 건수			다문화혼인 건수			다문화 구성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국	309,759	326,104	329,087	33,862	35,098	30,695	10.9	10.8	9.3
서울	71,172	72,798	73,604	7,601	7,698	6,644	10.7	10.6	9.0
부산	18,997	20,577	20,591	1,637	1,797	1,619	8.6	8.7	7.9
대구	13,041	13,675	13,987	960	1,036	978	7.4	7.6	7.0
인천	16,957	17,740	18,292	1,814	1,890	1,555	10.7	10.7	8.5
광주	8,183	8,658	9,024	664	730	647	8.1	8.4	7.2
대전	8,989	9,456	9,822	812	813	666	9.0	8.6	6.8
울산	7,329	7,726	7,831	526	543	532	7.2	7.0	6.8
경기	75,238	80,187	80,788	8,171	8,115	7,329	10.9	10.1	9.1
강원	8,202	8,450	8,418	909	895	813	11.1	10.6	9.7
충북	8,773	9,268	9,629	864	1,043	874	9.8	11.3	9.1
충남	12,895	13,315	13,346	1,597	1,509	1,331	12.4	11.3	10.0
전북	9,711	10,633	10,458	1,257	1,309	1,129	12.9	12.3	10.8
전남	10,139	10,573	10,348	1,438	1,625	1,291	14.2	15.4	12.5
경북	14,634	15,738	16,085	1,375	1,626	1,423	9.4	10.3	8.8
경남	19,715	21,385	20,964	1,914	2,147	1,721	9.7	10.0	8.2
제주	3,349	3,585	3,631	397	460	375	11.9	12.8	10.3

주: 1) 전국은 국외포함으로 지역별 합계와 전국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혼인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자료: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1.

<표 2>에서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를 보면, 국제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1년 기준 전남(12.5%), 전북(10.8%), 제주(10.3%), 충남(10.0%) 순이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4.3%로 가장 많고, 중국(33.9%), 필리핀(9.3%), 일본(5.0%), 캄보디아(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2000년 51.3%에서 2004년 73.6%까지 무려 20% 이상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감소하는 시기 이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혼인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 국제이혼 건수는 2000년 기준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1%(11,495건)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72.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아내와의 이혼율이 57.3%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23.1%), 필리핀(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국가 출신 여성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전국 기준 69.6%에서 2011년 84.3%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3개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87.2%였다가 2011년 77.5%로 감소한 것을 보면, 기타 국가보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3개국 출신 여성과의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국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2000-2011년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전체 국제이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건수	%	건수	%
2000	119,455	1,498	1.3	247	16.5	1,251	83.5
2001	134,608	1,694	1.3	387	22.8	1,307	77.2
2002	144,910	1,744	1.2	380	21.8	1,364	78.2
2003	166,617	2,012	1.2	547	27.2	1,465	72.8
2004	138,932	3,300	2.4	1,567	47.5	1,733	52.5
2005	128,035	4,171	3.3	2,382	57.1	1,789	42.9
2006	124,524	6,136	4.9	3,933	64.1	2,203	35.9
2007	124,072	8,294	6.7	5,609	67.6	2,685	32.4
2008	116,535	10,980	9.4	7,901	72.0	3,079	28.0
2009	123,999	11,473	9.3	8,246	71.9	3,227	28.1
2010	116,858	11,088	9.5	7,852	70.8	3,236	29.2
2011	114,284	11,495	10.1	8,349	72.6	3,146	27.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4〉 전국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율, 2009-2011년

구분	전체 이혼 건수			다문화이혼 건수			다문화 구성비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국	123,999	116,858	114,284	13,653	14,319	14,450	11.0	12.3	12.6
서울	24,780	22,662	21,440	3,627	3,534	3,426	14.6	15.6	16.0
부산	8,753	7,847	7,692	733	669	768	8.4	8.5	10.0
대구	5,415	5,168	4,706	350	407	367	6.5	7.9	7.8
인천	8,038	7,511	7,004	876	867	803	10.9	11.5	11.5
광주	3,109	3,036	2,895	236	292	282	7.6	9.6	9.7
대전	3,475	3,232	3,095	262	263	275	7.5	8.1	8.9
울산	2,620	2,622	2,398	209	226	217	8.0	8.6	9.0
경기	30,530	28,519	29,214	3,327	3,415	3,667	10.9	12.0	12.6
강원	3,786	3,625	3,615	287	333	328	7.6	9.2	9.1
충북	3,785	3,603	3,728	369	392	416	9.7	10.9	11.2
충남	5,245	4,811	4,886	501	561	530	9.6	11.7	10.8
전북	4,330	3,948	4,215	457	525	552	10.6	13.3	13.1
전남	4,339	4,372	4,179	487	580	573	11.2	13.3	13.7
경북	5,556	5,531	5,379	459	552	566	8.3	10.0	10.5
경남	7,547	7,576	7,270	580	728	752	7.7	9.6	10.3
제주	1,507	1,513	1,442	126	163	186	8.4	10.8	12.9

주: 1) 전국은 국외포함으로 지역별 합계와 전국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이혼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5〉 전국 다문화 사망, 2009-2011년

구분	전체			다문화 사망(명)			다문화 이외 사망(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체	247,033	255,505	257,503	1,338	1,506	1,557	245,695	253,999	255,946
비율	100.0	100.0	100.0	0.5	0.6	0.6	99.5	99.4	99.4
남성	137,775	142,390	143,280	980	1,125	1,154	136,775	141,265	142,126
여성	109,232	113,085	114,168	312	351	348	108,920	112,734	113,820

주: 1) 전체는 성별 미상 포함으로 성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사망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자료: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1.

이혼으로 인한 해체 외에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살펴보면, 2011년 다문화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다(표 5). 다문화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1,154명, 여성 348명으로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약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초혼 남녀 연령차가 2011년 기준으로 9.5세로 2010년의 10.3세보다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인간의 초혼 남녀연령차가 2.2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기에 남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가족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전북지역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467건에서 2011년 1,111건으로 약 10년 사이 600건 이상 증가하였다(표 6). 전북은 전체 혼인건수가 10,458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혼인 중 다문화 구성비율은 10.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 <표 6>에서 성별에 따른 국제결혼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2000년 403건에서 2008년 1,389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이후 완만한 변화의 폭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2000년 13.7%에서 2011년 10.1%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전북 지역의 전체 혼인 건수는 10,353건으로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건수가 많은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한편 국제결혼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7%로 나타났는데 전주와 군산, 익산 3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전북 평균 10.7%보다 높은 국제결혼

〈표 6〉 연도별 전북의 국제결혼 추이, 2000-2011년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전체 국제결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	%	건수	%
2000	11,362	467	4.1	403	86.3	64	13.7
2001	10,281	506	4.9	442	87.4	64	12.6
2002	10,687	528	4.9	452	85.6	76	14.4
2003	10,246	801	7.8	719	89.8	82	10.2
2004	10,111	1,463	14.5	1,195	81.7	268	18.3
2005	10,196	1,597	15.7	1,385	86.7	212	13.3
2006	10,429	1,464	14.0	1,343	91.7	121	8.3
2007	10,864	1,432	13.2	1,312	91.6	120	8.4
2008	10,399	1,506	14.5	1,389	92.2	117	7.8
2009	9,605	1,252	13.0	1,141	91.1	111	8.9
2010	10,525	1,282	12.2	1,171	91.3	111	8.7
2011	10,353	1,111	10.7	999	89.9	112	1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7〉 전북 지역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비율, 2008-2011년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건수				국제결혼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전북	10,399	9,605	10,525	10,353	1,506	1,252	1,282	1,111	14.5	13.0	12.2	10.7
전주	3,490	3,335	3,622	3,765	308	247	247	288	8.8	7.4	6.8	7.6
군산	1,689	1,639	1,856	1,834	221	199	218	182	13.1	12.1	11.7	9.9
익산	1,819	1,592	1,726	1,712	278	222	220	166	15.3	13.9	12.7	9.7
정읍	610	553	584	556	117	86	98	71	19.2	15.6	16.8	12.8
남원	412	382	402	422	82	70	74	82	19.9	18.3	18.4	19.4
김제	481	437	482	420	95	83	87	64	19.8	19.0	18.0	15.2
완주	617	534	585	489	98	87	79	67	15.9	16.3	13.5	13.7
진안	141	121	159	127	32	29	27	35	22.7	24.0	17.0	27.6
무주	130	123	129	131	24	17	18	17	18.5	13.8	14.0	13.0
장수	121	108	144	79	27	20	25	14	22.3	18.5	17.4	17.7
임실	170	129	142	152	33	24	31	26	19.4	18.6	21.8	17.1
순창	139	140	151	120	45	28	29	15	32.4	20.0	19.2	12.5
고창	296	243	268	265	67	53	52	42	22.6	21.8	19.4	15.8
부안	284	269	275	281	65	68	58	42	22.9	25.3	21.1	14.9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건수 5건 이하는 ...으로 처리되어 지역별 합계가 전북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진안(27.6%) 이었고, 그 다음은 남원(19.4%), 장수(17.7%), 임실(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2000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북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33.1%), 필리핀(8.9%), 캄보디아(6.6%), 일본(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 지역 전체 이혼 건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8). 2011년 현재 전체 이혼 건수는 4,215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16.0%), 전남(13.7%) 다음으로 전북이 13.1%를 차지하여 전

〈표 8〉 전북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2004~2011년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전체 국제이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건수	%	건수	%
2004	5,086	84	1.7	61	72.6	23	27.4
2005	4,471	121	2.7	94	77.7	27	22.3
2006	4,448	233	5.2	193	82.8	40	17.2
2007	4,417	336	7.6	285	84.8	51	15.2
2008	3,784	405	10.7	357	88.1	48	11.9
2009	4,285	379	8.8	333	87.9	46	12.1
2010	3,910	401	10.3	366	91.3	35	8.7
2011	4,176	437	10.5	397	90.8	40	9.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9〉 전북 지역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비율, 2008~2011년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건수				국제이혼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전북	3,784	4,285	3,910	4,176	405	379	401	437	10.7	8.8	10.3	10.5
전주	1,123	1,300	1,161	1,245	95	98	101	94	8.5	7.5	8.7	7.6
군산	648	705	642	750	59	61	52	72	9.1	8.7	8.1	9.6
익산	740	802	707	727	73	64	71	78	9.9	8.0	10.0	10.7
정읍	255	315	282	296	34	24	19	34	13.3	7.6	6.7	11.5
남원	160	181	161	184	21	-	18	20	13.1	-	11.2	10.9
김제	195	221	231	209	30	20	24	21	15.4	9.0	10.4	10.0
완주	167	220	195	227	22	24	33	21	13.2	10.9	16.9	9.3
진안	45	54	67	50	-	-	10	7	-	-	14.9	14.0
무주	48	46	50	59	-	-	6	13	-	-	12.0	22.0
장수	44	61	37	44	-	-	-	10	-	-	-	22.7
임실	62	53	39	59	-	-	-	-	-	-	-	-
순창	50	63	64	57	-	-	15	9	-	-	23.4	15.8
고창	107	126	129	125	-	-	18	15	-	-	14.0	12.0
부안	140	138	145	144	-	11	16	23	-	8.0	11.0	16.0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제이혼 건수 5건 이하는 ...으로 처리되어 지역별 합계가 전북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온라인간행물.

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다문화 구성비율을 보인다(표 4). <표 8>에서 보듯이, 2011년 전북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437건으로 전체 이혼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90.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2011년 397건으로 7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336건 증가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31건(58.2%)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95건(23.9%), 필리핀 21건(5.3%), 캄보디아 15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3개 국가 출신 여성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7.2%에서 2011년 87.4%로 20%p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서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추이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전북의 전체 이혼 건수는 4,176건 가운데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437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78건), 군산(72건), 정읍(3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전체 이혼 중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장수가 22.7%로 다문화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주 22.0%, 부안 16.0%의 비율을 보였다.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와 함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족해체 예방정책이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주요 상대국 정부와의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및 피해 상담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언어 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의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체위기에 있거나 해체 이후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자국어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여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주,

구미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 등 피해발생시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의 일시 보호와 함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법률·출국·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16개 시도에 22개소가 있으며 전북은 전주와 익산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지원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이주여성디딤터란 명칭으로 전국에 1개소가 운영 중이다.

2) 전라북도의 대응정책

전북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체 위기 및 해체 가족을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10).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은 부모교육과 배우자교육, 결혼이민자교육, 가족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합의 시간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해체위기에 있거나 해체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개소와 이주여성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표 11).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북전주센터에서는 피해자 신고접수 및 폭력피해자 지원, 체류·이혼·법률·생활·노동·의료상담과 함께 통번역서비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의 문제를 지원해주는 일시보호시설로 전북지역에 아시아이주여성쉼터(전주)와 전북이주여성쉼터(익산) 2개소가 있다.

〈표 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법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관계와 소통,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 관련 법률, 사례발표, 갈등 상담, 세계화와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행복프로그램운영 140백만원(도 자체 사업)	700가정 (부부·자녀· 시부모 등)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 전문인력 활용 연간 80회기 이상(가족 상담 30회기 이상 필수)	이혼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표 11〉 전라북도 해체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관 운영

구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익산	전주
주요 내용	-피해자 신고접수 및 이주여성상담 -폭력피해자 지원, 체류·이혼 및 법률·생활·부부갈등, 가족갈등)·노동·의료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의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전문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입소 보호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위한 의료 지원 -남편 및 가족상담 통한 가정회복 기능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사업대상	2011년 5,381건 상담(부부 갈등, 이혼 등)	입소 정원 12명	입소 정원 18명
사업비	194백만원 (국비 169백만원, 도비 25백만원)	141백만원 (국비/도비/시군비)	134백만원 (도비/시군비)

그러나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 취업,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쉼터에서 퇴소한 이주여성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특히 동반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Ⅲ.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1) 조사자료 개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²⁾된 이후 실시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표본조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지역별 기초 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실태조사³⁾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2)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²⁾에 따라 기존의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 인지·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모든 사유의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2009년의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출생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를 주요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형식을 띠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모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거주가 확인된 131,7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73,669가구가 응답하여 조사 완료율은 56%에 이르렀다.

지역⁴⁾의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비교·정리하고, 2012년에 표본조사로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에서 다문화가족 해체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는 수준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2009년에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인구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표 12), 먼저, 출신국적별로 일반 다문화

〈표 12〉 다문화가족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9년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5,306)	이혼·사별 (130)
전체		100.0	100.0
출신국	중국(조선족)	21.6	37.2
	중국(한족, 기타 민족)	20.0	14.5
	베트남	28.6	13.5
	필리핀	13.3	26.3
	일본	6.3	2.8
	태국	1.3	1.0
	캄보디아	4.6	0.8
	기타	4.3	4.0
결혼이민자 연령	29세 이하	41.0	21.7
	30-39세	33.2	31.0
	40-49세	20.4	34.9
	50세 이상	5.4	12.4
배우자 연령	29세 이하	0.7	1.4
	30-39세	19.1	1.6
	40-49세	56.7	62.8
	50세이상	23.5	34.2
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초등학교 이하	9.6	11.2
	중학교	29.4	22.0
	고등학교	40.0	47.1
	대학교 이상	20.1	19.7
배우자 학력수준	초등학교 이하	9.0	14.3
	중학교	19.6	31.8
	고등학교	51.7	44.8
	대학교 이상	19.7	9.1

4) 전라북도의 경우 2009년 당시 현지 조사원이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5,436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수는 4,043명이었고, 지역별·성별·국적별 응답률에 따른 사후보정을 실시하여 응답가중치를 부여해 최종적으로 5,436명을 유효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1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2009년

체류기간	(단위: %, 명)		
	일반(유배우) (4,827)	이혼 (90)	사별 (20)
1년 미만	13.1	1.4	15.0
1년-2년 미만	16.4	7.1	0.0
2년-5년 미만	35.1	17.1	15.0
5년-10년 미만	22.1	37.1	30.0
10년 이상	13.3	37.1	40.0
계	100.0	100.0	100.0

〈표 14〉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 2009년

자녀수	(단위: %, 명)	
	일반(유배우) (4,530)	이혼·사별 (126)
0명	60.0	37.5
1명	21.0	37.6
2명	16.2	19.0
3명 이상	2.8	6.0
계	100.0	100.0

가족은 베트남, 중국 조선족, 한족의 순으로 구성비를 보였고 이혼·사별한 가족은 중국 조선족, 필리핀, 한족,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일반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20대(41%), 30대(33.2%), 40대 이상(25.8%)를 차지하였고, 이혼·사별한 가족은 40대(34.9%), 30대(31%), 20대(21.7%)의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의 연령은 일반 다문화가족에서는 40대가 56.7%, 50대 이상이 23.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연령은 40대(62.8%)와 50대 이상(34.2%)의 합이 97%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표 13>에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2-5년 미만이 35.1%, 5-10년 미만이 22.1%,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5-10년 미만 37.1%, 사별은 10년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은 5년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과 사별의 경우 5-10년 미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4>에서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60%였고, 해체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37.5%,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6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택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49.2%가 전세 또는 월세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소유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6>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26.8%, 100-200만원 미만 37.9%, 300만원 이상이 5%인데 비해 이혼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 79.5%, 50만원 미만 24.4%, 사별한 경우 50만원 미만이 41%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에서 취업 여부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이 32.8%,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이혼의 경우 52.9%, 사별의 경우 56.1%로 나타나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취업률에 있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

〈표 15〉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택 소유형태, 2009년

(단위: %, 명)

주택 소유형태	일반(유배우) (5,192)	이혼·사별 (124)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38.4	20.2
배우자 부모 소유	34.3	12.1
전세 또는 월세	22.6	49.2
기타	4.6	19.4
계	100.0	100.0

〈표 16〉 다문화가족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2009년

(단위: %, 명)

월평균 가구소득	일반(유배우) (5,048)	이혼 (100)	사별 (21)
50만원 미만	6.4	24.4	41.0
50만원-100만원 미만	20.4	41.5	38.5
100만원-200만원 미만	37.9	18.3	12.8
200만원-300만원 미만	12.3	3.7	2.6
300만원 이상	5.0	0.0	0.0
모르겠다	18.0	12.2	5.1
계	100.0	100.0	100.0

직종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받는 직종에 머물러 있으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도 높아 더욱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표 18),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표 17〉 다문화가족 취업사항, 2009년

(단위: %, 명)

취업 여부	일반(유배우) (5,192)	이혼 (105)	사별 (21)
현재 일하고 있다	32.8	52.9	56.1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17.8	28.2	24.4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49.4	18.8	19.5
계	100.0	100.0	100.0

〈표 18〉 다문화가족 유형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2009년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2,415)	이혼 (80)	사별 (15)
언어소통의 어려움	25.1	13.6	6.9
낮은 임금	11.1	12.1	20.7
고된 일	10.1	12.1	17.2
편견과 차별	9.8	13.6	17.2
자녀양육	9.9	19.7	13.8
별로 어려움 없음	16.4	16.7	10.3
기타	17.6	12.2	13.9
계	100.0	100.0	100.0

〈표 19〉 결혼이민자의 이혼·사별까지의 기간, 2009-2012년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	10년-15년미만	15년 이상	평균
2009년 실태조사	28.9	24.2	25.7	7.4	13.8	4.7
2012년 실태조사	14.1	14.7	36.6	12.0	22.6	10.6

〈표 20〉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포함) 사유, 2009-2012년

(단위: %)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2009년 실태조사	13.2	29.4	7.0	19.0	12.9	8.7	9.8	-
2009년 동일 조사대상	5.5	47.5	6.6	22.6	5.1	6.2	1.1	3.9
2012년 실태조사	3.6	50.3	8.4	14.3	4.2	4.8	0.0	5.6
2012년 신규 조사대상	5.1	48.1	7.0	20.7	4.9	5.9	5.1	4.3
전체	5.1	48.1	7.0	20.7	4.9	5.9	5.1	4.3
전북 2009년 실태조사	15.0	21.4	7.6	21.1	17.7	5.0	4.3	7.8

〈표 21〉 해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 있어 힘든 점, 2012년

(단위: %, N=120)

힘든 점 없음	외로움	가족간 갈등	자녀 양육	자녀 교육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 차별 대우	기타	계
7.0	17.1	4.6	7.6	6.3	37.8	10.9	1.1	3.4	4.2	100.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2년의 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결혼생활 5년 미만 시기에 이혼 또는 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5년 이상 지난 후에 이혼·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19).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2009년의 경우에도 초기 이혼, 사별보다는 5년-10년 미만 시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이혼사유는 2009년 조사 당시 성격 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 학대와 폭력 12.9%로 나타났고, 2012년 조사에서는 성격 차이 48.1%, 경제적 무능력 20.7%, 학대와 폭력이 4.9%로 일반 가족들과 유사한 이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전북지역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성격차이 21.4%, 경제적 무능력 21.1%, 학대와 폭력이 17.7%로 나타났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 순이었다(표 21).

2.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내적·외적 조건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혼, 사별 등으로 해체를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혼·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색하였다.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아보았고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쉼터를 통해 소개받았다. 이들의 특성은 <표 22>와 같다.

1) 결혼 과정: 결혼의 환상, 잘못된 정보

20개의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함께 TV드라마를 통해 보여지는 한국과 한국 생활

〈표 22〉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2012년

사례	연령	거주지	국적	국적 취득	결혼당시 연령		초혼/재혼		결혼 연도	이혼/사별 연도	재혼 자녀	배우자와의 자녀(나이)	현재 동거가족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1	28	고창	캄보디아	○	20	47	초혼	초혼	2005	이혼 2012		아들(8)	×
2	32	전주	베트남	○	24	43	초혼	초혼	2005	이혼 2006		딸(8)	자녀
3	27	전주	베트남	×	22	46	초혼	초혼	2009	이혼소송중		×	×
4	50	전주	필리핀	○	39	39	초혼	초혼	2002	이혼 2005		딸(10)	자녀
5	30	전주	베트남	×	24	37	초혼	초혼	2006	이혼 2007		아들(7)	× (베트남)
6	34	김제	필리핀	×	28	28	초혼	재혼	2008	이혼 2011	아들	아들(4)	자녀
7	37	김제	필리핀	○	22	32	초혼	초혼	1999	이혼 2012		딸(8,12)	×
8	30	익산	베트남	○	23	39	초혼	초혼	2006	이혼소송 2012		딸(4,6)	자녀
9	31	익산	캄보디아	×	25	48	초혼	초혼	2007	이혼소송 2011		딸(6) 아들(3)	자녀
10	29	익산	캄보디아		25	46	초혼	재혼	2009	이혼소송	딸	아들(4)	자녀
11	29	전주	네팔	×	25	52	초혼	재혼	2009	소송준비		아들(5)	자녀
12	29	전주	필리핀	×	23	40	초혼	모름	2007	소송준비		아들(4)	자녀
13	28	전주	캄보디아	○	23	39	초혼	초혼	2008	이혼 2012		딸(6)	자녀
14	32	전주	중국	○	25	32	초혼	초혼	2006	이혼 2011		아들(9)	자녀
15	28	김제	필리핀	×	21	43	초혼	초혼	2006	사별 2012		딸(6,7)	친정엄마, 자녀
16	29	정읍·의정부	필리핀	○	20	33	초혼	초혼	2004	사별 2010		딸(8)	자녀
17	32	무주	중국	○	24	40	초혼	초혼	2005	사별 2013		딸(7)	시부모, 자녀
18	32	무주	베트남	○	23	37	재혼	초혼	2004	사별 2012		딸(8) 아들(6)	시부모, 자녀
19	30	완주	캄보디아	×	24	37	초혼	초혼	2007	사별 2012		아들(3)	자녀
20	48	고창	필리핀	○	30	40	초혼	초혼	1995	사별 2010		딸(16,17)	자녀

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의 경로를 보면 10사례가 중개업을 통해 결혼하였고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가 7사례, 통일교를 통해서가 3사례였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여성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남편의 성격·건강·학력·직업·경제력을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 과정에 들어오게 된다. 특히 현재 소송중이거나 이혼을 한 사례들을 보면 중개업⁵⁾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2000년대 중반 시기에 결혼한 유형들로 제도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는 시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의 초기부터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2) 이혼 과정: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20사례의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음주 문제,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으면서 가출, 쉼터 입소, 가족 복귀, 다시 재가출하거나 쉼터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관계망과 주위의 지지세력을 결여하고 있는 만큼, 무방비 상태로 각종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폭력에 직면한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재 폭력이나 가출을 종용받고 이혼 위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위기지원체제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가 있다. 그러나 사례들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3) 닥친 불행: 질병과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평균 연령차는 11.4세로 많은

5)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은 1973년의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 결혼중개업종의 자유화 조치 이후 결혼중개업소 및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에 대한 결혼중개서비스가 부실하게 되는 과정이 도출되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고제의 부활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국제결혼의 이원화로 귀결되다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의 신고·등록업무를 시·군·구청으로 단일화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도 부여하였다. 이 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인데, 본 연구의 사별 사례들도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례들이다. 사례 #20은 배우자가 직장 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형으로 산재보험 등 보상금을 받아 자녀양육 및 교육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시댁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하는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일꾼이나 보모 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하기에 배우자의 사망은 시댁에서 결혼이민자 자신의 위치를 자리잡을 수 없게 하고 있었다.

4) 이혼·사별 이후 삶의 고단함

① 주거문제: 이혼의 경우에는 당장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별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던 곳이 불안정한 거주지였거나 시댁에 동거하던 중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의 20 사례 중 5개의 사례는 쉼터에 머물고 있었으며, 일터에 딸린 숙소나 여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3사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7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사별의 사례 중 시댁에 거처하는 경우가 2사례, 모자원 거주 1사례, 자가 2사례로 나타났다.

② 경제적 어려움: 결혼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우자와 함께 힘든 삶을 꾸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배우자의 부재는 이들을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리게 한다. 이혼 및 사별 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취업능력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전일제 일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례 다수의 여성들이 기초수급이나 임시직 등의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20사례 중 이혼이 완료된 사례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격 확보를 얻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만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액마저 삭감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⁶⁾.

③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의 어려움: 사례조사를 통해 만나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수급이나 임시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과 교육비의 부담은 컸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후 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 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

6)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상당히 저조하여서 다수가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추정된다.

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④ 체류권의 문제: 이혼이나 사별의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사례조사를 통해 만나본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고 자녀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재판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를 물어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면 미체류자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IV.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 지원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본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체 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인적 자원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해체 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들이 자녀돌봄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사별 등 해체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안에 해체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정책 추진과제

①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가칭) 설립방안: 호남지역의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지원센터를 전라북도에 건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호남권역에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 구성도가 높고, 행정지원체계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 단위에서 다문화교류과를 두어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모델 개발로 차별화된 자립·자활 모델을 실행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이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위기 및 해체된 가족의 서비스 지원 확충: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혼 및 사별과정에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가족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도 센터별 상황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상담공간의 배치도 센터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과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업무의 독립성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센터마다 상담실 공간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주센터의 운영 개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적인 위기개입 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대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 콜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역센터의 경우 야간상담은 중앙센터로 연결되고 있어 가정폭력이나 다문화가족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 센터 인원을 보강하여 야간 상담원을 배치하는 안과 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긴급피난처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일시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두년·신용묵·이정환. 2010.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김두년·조은희·염재웅·김성진·허대원. 2012.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 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

구학》 30(3): 25-56.

- 김승권·김유경·박정윤·김연우·최영준. 2012.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정·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유경·최현미·김가희·성수미. 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김민정·한진수. 2005.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재엽·최재성·Clifton R. Emery·김동구·박상언·정윤경·이정은. 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영·최훈석.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경연. 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박미정. 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정예리. 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75-105.
- _____. 2011. “국제결혼여성 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31(3): 104-139.
- 박진근. 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결정』.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 _____. 2013.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이명신. 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22: 207-266.
- 이정희. 2006. 『여성결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 장명선.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연구』. 서울여

성가족재단.

조경옥·조무현. 20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홍미희·한경현·한미경. 2011.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정책방향』. 인천발전연구원.

통계청. 2011.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통계청.

_____. 2011. 『2011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13. 11. 1. 접수; 2013. 11. 15. 수정; 2013. 12. 1. 채택)

Multicultural Family's Dissol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ocusing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Jeollabuk-do

Shinkyu Par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Ayoung Jo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solution reasons of family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process, present lif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A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09*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ro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are facing now economic poverty, child-rearing, residing problem etc and investigated policy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dissolu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self-help center for migrant women

연구논문

화교학교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

두 언문**

본 연구는 한국의 화교학교 내 한국 학생의 유입 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화교학교의 특수한 역사 배경과 한국 학부모의 화교학교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화교학교에서의 현지 관찰, 화교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화교학교를 선택한 한국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화교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은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한국 학생의 입학 조건이 화교학교에도 적용되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학교 한국학생 입학 논란의 여파로 화교학교도 엄격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한국 학부모들은 정부의 입학 제한과 단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화교학교로 보내는 데, 그 이유는 글로벌 문화자본에 대한 욕망과 중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화교학교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어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국내 조기유학의 방편 그리고 한국 공교육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교학교의 교육체계는 한국 학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화교학교는 한국, 대만과 중국 정부들 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일어난 교육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구시대적 교육 방식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어에 대한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과 이러한 학교의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 따라서 화교학교와 한국 학부모의 사이에 갈등과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화교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화교학교는 오랫동안 화교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 왔고 한국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화교학교의 존폐는 화교사회의 지속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화교학교를 한국인이 외국인들과 공생하면서 상호 이해와 인정에 도달하는 문화 접촉의 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화교, 화교학교, 외국인학교, 민족교육, 화교정책, 학교선택, 글로벌 문화자본, 조기유학, 대만교육

* 이 글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의 통계 자료와 내용을 인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더해서 쓴 것이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현대사회문화전공 석사. tuyenwen@naver.com.

I. 머리말

한국화교의 역사는 1882년부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몇 세대를 이어 살아왔다. 한국 정부는 화교의 경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래 동안 차별 정책과 법으로 화교에게 가하였다. 차별과 배척을 당한 환경 속에서 한국화교들은 사회에 융합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한국화교들은 여전히 중화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국화교들은 그들이 태어난 한국에서 아직도 이방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

연구자가 특히 한국화교 집단의 중국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화교학교에 관심을 가진다.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한국화교들은 대만의 교과 내용을 채택하고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簡體字)가 아닌 대만의 번체자(繁體字)를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교학교는 현지의 교육체제와 중국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화교학교만 여전히 대만의 교육체제를 철저히 따르며 민족교육을 통해 한국화교들이 집단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화교교육의 지속은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전수하고 민족 자부심에 대한 표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화교들이 화교학교를 다니는 것은 소수집단의 불안감 그리고 민족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다. 화교학교의 변성은 화교의 이러한 심리와 역사적으로 한국정부가 화교학교에 대한 ‘불간섭-불인정’의 정책 그리고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이 맞물려서 생긴 역사적 산물이었다.

최초의 화교학교는 1902년에 인천에서 설립되었으며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화교학교는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외국인학교이며 현재 정부가 인가한 57개 외국인학교 중에 16개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에 역사적으로 화교인구가 제일 많은 1970년대에는 3만 3천 명 정도에 이르렀고 그 후에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다. 화교 인구의 감소로 화교학생 수가 줄어들며 화교학교의 수도 급감하였다. 한 때 60개 정도의 화교학교는 현재 정부가 외국인학교로 인정한 16개를 포함해 총 25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한국 학생의 유입으로 화교학교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다(주간조선, 2011.2.14). 현재 전국 3,000명가량의 대만, 한국,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화교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한국 학생으로 짐작된다.

화교학교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은 화교학교를 역동적인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본다. 화교의 민족교육을 유지해 온 화교학교가 화교

교육을 일종의 소비와 투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 소비자인 한국 학부모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는 화교학교를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학교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화교 민족교육의 목적과 달리 한국 학부모의 수요로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을 검토하고, 서울에 있는 세 화교학교를 현지 관찰을 실행하며, 그곳에 다니고 있는 한국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화교학교 교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화교학교의 역사적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안으로 유입하는 한국학생의 목적과 현황 그리고 정부의 법적인 관리의 실재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화교학교연구와 다르게 학교의 교과내용과 그들의 정체성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육 체계의 변두리였던 화교학교로 역으로 유입하는 한국 학생을 주로 다룬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교육 목적으로 인해 소수자들이 유지해 온 민족교육 체계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화교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교학교가 한국인과 한국학교와의 이해와 접촉의 곳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Ⅱ. 화교교육과 한국 학부모의 글로벌 문화자본 추구

앤더슨(Anderson, 1983: 25-27)은 “민족은 상상의 정치공동체이며 본질상은 제한적인 것으로 상상되고, 동시에 주권을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다.”라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창의적 정의를 내렸다. 한국에 이주해 온 화교들이 이주했던 시기의 정체성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교육을 통해 고향이 어딘지를 부단히 일깨워주며 상상을 통해 고향을 기억하면서 거주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화교학교에서 중국인의 교육을 받아,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먼 곳에 있는 자신의 기원과 중국성, 그리고 조국 중화민국 등 문화적 가치관들을 전수받는다.

화교학교의 학생들은 중국인의 민족교육을 배움으로써 중화민족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면서 한국화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한국화교’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교육, 역사인식, 언어 능력의 습득 등을 통하여 한국화교와 한국 사람을 구분하게 해 준다. 다른 면에서 화교학교는 중화민국의 해외 공민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중화민국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작동한다. 화교학교는 한

국화교를 언어적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학교이며 공동의 언어에 의해 인지되는 이념적 민족기관이기도 하다(Balibar, 1993; 권준희, 2002: 65에서 재인용).

전 세계에서 많은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집단들은 정착국가와 시민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현지 교육체계에 편입되면서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교육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화교교육은 한국 교과에 영향 받지 않고 대만의 교과를 전일제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화교들이 한국에서 겪어온 차별의 역사와 관련된다(정은주, 2013: 138).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한국에 떠난 ‘한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가깝게 느끼고 자신이 그냥 화교가 아닌 ‘한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한화’라는 공동체가 상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국 교육 및 중국어 한자의 전수 그리고 한화가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는 집단 성원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한화’에 대한 공동체 상상을 가능케 하는 매개물들은 모두 화교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민족교육을 통해 한국화교라는 상상적 공동체가 본질화 될 수 있었다. 이 관점으로 보면 화교학교는 화교 집단을 지탱시킨 버팀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화교학교는 이러한 민족교육의 체계는 갖추고 있으며 한국 학부모들이 그들의 교육 수요로 인해 화교학교를 선택한 것이 일어났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출현과 함께 시장 이데올로기와 소비자 권력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재맥락화 하고 교육을 소비문화상품으로 간주하는 시장이론이 나타났다. 학교선택은 학교에 책무성과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여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것은 부르디외이다. 그는 자본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문화자본은 “상징적 표현이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로 정의된다. 문화자본은 경제적 부를 결정하는 화폐 자본보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개인의 취향과 한 사회의 문화적 표상과 수준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경제자본의 소유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지배 권력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Bourdieu, 1984).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간접적이고 비가시화적인 문화자본은 지배계층의 상징적 구별짓기의 수단 즉, 새로운 사회재생산의 기제로 등장하였다(최섯별, 2003: 6-7).

원래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은 프랑스에서 계급재생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자본의 이론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 내에 속하지 않고 국가

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문화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경험이나 외국 문화의 습득 등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유리한 것을 ‘글로벌 문화자본’이라고 정의한다.

글로벌 시대에 자녀의 성공을 위해 외국 유학 및 외국어 공부 등 새로운 글로벌 문화자본을 추구하는 추세가 늘어났다. 한국 어머니들이 외국에 가서 자녀를 출산하는 원정출산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자녀들을 보내는 것도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하고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가 중시했던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기러기 아빠’가 증가한 것은 문화자본 경제의 치열해짐을 보여준다.

한국의 현대화는 주로 미국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고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도 영어와 미국 명문대 학위 획득에 집중하였다(김종영, 2008: 71-72).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어 글로벌 문화자본이 보편화되면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 위해 또 다른 매개물이 필요해졌다(강윤희, 2012). 한국 학부모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국어라는 글로벌 문화자본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들을 화교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불법의 위험과 학력 인정 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녀를 화교학교로 보내고 있다.

Ⅲ. 화교학교의 역사적 검토

한국화교 유입 초기에는 정착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독신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생 수 또한 많지 않았다. 청일 전쟁 이전에 현대적 의미의 화교 학교는 없었고 당시의 서당 교육은 사서오경 등 전통적 중국식 교육을 가르쳤다. 일부 화교들에게는 상업 및 경영상의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술 및 주산 같은 과목을 전수하기도 하였다(석미령, 1995: 26).

1902년, 인천의 화교들이 30명의 학생으로 최초의 화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1910년, 서울에 화교소학교를 세우고 4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1912년에 부산에서도 화교소학교가 생겼다. 화교학교의 설립이 활발해진 것은 1920년대 이후이었다. 화교들의 경제 기반이 안정되면서 화교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자 가정 단위로 거주한 화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중국에서 가족 단위로

이주한 화교가 많아지면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수도 늘어났다. 화교사회가 정착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화교학교의 교사는 중국에서 직접 초빙되어 중국과 같은 교과과정을 가르쳤으며, 화교 학생에게 중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10년대부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기간에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엄격히 감시하였기에 화교학교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화교교육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12년 성립된 북경정부의 화교교육 목표는 화교들을 중국국민처럼 육성시키고 애국사상을 고취하여 현지에서의 생존과 사업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교교육의 주요 목적은 국가주의와 실용주의로 보이는데, 전자는 조국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화교 거주지에 대한 것이다.

이어서 1925년 남경국민정부의 화교교육 목표는 국내의 교육과 같이 삼민주의를 창도(倡導)하는 ‘당화교육(黨化教育)’이었다. 남경국민정부는 화교들을 중국을 사랑하는 교민으로 육성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1935년에 조선총독부는 화교학교를 반일 교육의 온상으로 여기고, 화교학교의 교과서를 압수하며 항일 교사를 구금하는 등 여러 탄압을 가하였다. 중일전쟁 시기인 1938년에 북경에 설립된 왕정위(汪精衛)의 친 일본 임시정부는 장개석의 중경국민정부를 대신하여 조선에 있는 화교를 관리하였다. 이 시기에 화교학교의 설립에 대해 일본의 협조적인 태도는 화교를 위한 것보다 화교학교의 교육방침에 일본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합치기 위함이었고, 화교통치와 조선총독부의 정책 수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이정희, 2007: 116-126).

해방 이후는 화교의 인구가 감소·쇠퇴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교학교 발전의 번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화교학교의 수가 급증하여 전국 곳곳에서 화교학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화교학교의 수가 가장 많은 때에는 전국에서 55개 소학교, 5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석미령, 1995: 27). 당시 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해방 후에 화교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방임하고 화교학교를 법적인 관리에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 후에 국내 정세의 불안정과 외교 관계의 모호성 등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¹⁾

이용재(2012)는 한국화교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한국정부의 화교교육에 대한 ‘불간섭·불인정’ 정책의 결과로 분

1) 경향신문, “外人學校(외인학교) 治外法權存在(치외법권존재),” 1958 2 2, .

석하였다. 한국정부는 경제적 분야에서는 화교의 뛰어난 상술로 한국인이 손해를 볼 것이나, 교육은 화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분야이므로 한국인과 충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방임하였다. 한국정부는 화교학교 내의 교과내용, 학교의 건립과 운영, 교과서의 채택과 교사임용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화교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임 정책으로 화교교육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대신에 한국정부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한국 내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재정 지원 또한 하지 않았다.

화교학교는 학생들의 학비와 화교들의 기부, 대만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운영하였다. 대만정부가 화교를 지원한 이유는 본토를 상실한 상태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에 해외화교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정부는 화교들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롭게 탄생하는 ‘조국’ 대만에 대한 귀속 의식을 화교에게 주입시키려 하였다(이덕수, 2012: 41-43). 대만정부는 화교들과의 연계성을 조성하기 위해 화교와 조국 대만의 관계를 역사적 경험으로 환기시켰다. 이는 화교의 혁명 기억 특히 중화민국 국부 손문과의 밀접한 역사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다. 교육을 통해 화교 다음 세대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만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화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대만정부의 지원과 화교들 자체의 교육열을 합쳐서 화교학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대만은 화교학교에 재정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교사들도 지원해주었다. 또한 대만정부는 화교 학생이 졸업한 후에 대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지원하였다. 화교 학생의 대만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따로 실시하고 장학금도 많이 제공하였다. 대만에서 공부하다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화교들은 활약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대만에 대한 것을 알리고 해외화교들을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반공세력으로 조직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병한, 2009: 54-60).

1950-1960년대 화교교육은 대만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되었으나 1965년 이후 대만정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화교의 재이주로 인해 화교 학생의 수가 감소되면서 화교학교의 재원이 더욱 부족해졌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준 높은 교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학교시설도 보충하지 못한 채 폐교된 화교학교의 수가 늘어나면서 화교교육이 점차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화교학교에 관련된 법적 변화

1977년 이전에는 화교학교가 한국에서 아무런 법적 기반이 없었고 치외법권의 영역이기도 하였다. 화교학교가 법적인 기반을 갖기 전에 한국정부는 화교학교에 대한 방임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인의 입학을 금지하지 못하였다. 1978년 화교학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학교’가 아닌 ‘외국인단체’의 신분을 얻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990년대 말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투자를 이끌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외국인단체의 등기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구속으로 인식되었고 1999년 2월 5일 ‘출입국관리법’을 수정하여 외국인단체의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1999년 3월 8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학교들에게 정부의 인정을 받고 각종학교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외국인학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각종학교의 지위를 갖게 되면 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지만, 양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한국 학생의 모집을 통해 재정형편을 개선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 특히 ‘학교보전법’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9년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을 때 화교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는 총 57개였다.²⁾ 1999년 말까지 이 규칙에 부합하여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학교는 불과 19개이고 이중에 화교학교는 8개뿐이었다. 그 이후 정부는 학교 인정의 표준을 낮추었고 이에 외국인학교들도 각 방면에서 정부가 개정한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되어(王恩美, 2012: 163-164) 2012년에 인정을 받은 외국인학교는 57개가 되었고 이중에 화교학교가 16개이다.

1999년에 개정한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한국인 혼혈,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 외국국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장기간 거주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원칙에 따른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유학·연수 및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비스수지 개선에 나서겠다(한국일보, 2008 4 29)”는 결정으로 2009년 2월 6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면

2) 국가별 설립 외국인학교 수는 대만 34개, 미국 17개, 일본 2개, 독일 1개, 이탈리아 1개, 영국 1개, 노르웨이 1개이다.

서 외국인 입학자격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조건 중에 내국인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또한 내국인 정원에 대한 규정은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2.11.26). 즉 화교학교 내 내국인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50퍼센트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2009년의 개정은 정식적 법령으로 규정하여 한국인이 외국인학교의 입학 규칙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입학 자격을 가져도 학생들의 학력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이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호혜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본국에서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한국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가능해야 마땅할 것이다. 화교학교는 1954년 대만의 교무위원회 및 교육부에서 규정한 ‘화교학교규정(華僑學校規程)’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화교 졸업생의 경우, 대만정부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만 대학의 입학 자격이 부여되고 한국에서도 각 대학의 외국인 입학규정에 따라 특례입학의 방식으로 입학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졸업생의 경우, 한국정부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에게 진학 및 전학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다.

2009년 한국정부는 한국인 학생의 입학 자격을 넓히면서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교학교의 학생들이 일주일동안 3시간 이상의 ‘한국’ 및 ‘한국사회’ 수업을 수행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졸업생이 한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 같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王恩美, 2012: 175-176). 그러나 화교학교는 실제로 일반 한국의 교과과정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화교학교의 한국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학생과 경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학생이 화교학교에서 졸업한 후 한국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V. 화교학교의 한국 학생 유입 현황

한국 정부의 지원 부재와 대만 정부의 지원 감소에 따라 지금 화교학교의 재정은 거의 학생의 학비로만 유지되고 있다. 재정적인 곤경에서 한국 학생의 입학은 화교학교의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화교학교는 새로운 학생 도입 방안

을 부단히 모색하였다. 실은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의 유입은 최근의 일이 아닌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71년 신문에 따르면 당시 화교소학교 1,900여 명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이 100여 명이 있었고, 화교중고등학교 2,500여 명 학생 중 한국 학생이 250 명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한국 학생 중에 현 전직고관, 외교관, 정치인 또는 재벌들의 자녀들이 상당수 끼어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에 외국인학교는 일부 특권층 인사들이 국내 교육을 기피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때 입학을 신청하는 한국인 학생이 많았으나 한국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아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71.11.24). 1970년대 이전에는 한국인이 화교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보편화된 현상이 아니었고 특정한 계층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본다.

1978년 화교학교들이 외국인 단체의 신분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한국정부가 한국 학생 입학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 화교학교가 법적 체계에 들어간 이후 최근까지 그동안 한국인이 화교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주목 받지 못하였으며 관련된 통계나 정보도 많이 없었다. 최근에 외국인학교의 불법 입학 문제가 신문에서 드러나면서 매체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러한 현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화교학교 내의 한국 학생의 인원수를 먼저 파악해 보자(표 1).

〈표 1〉 2012년 화교학교 화예 학생 통계

(단위: 개, 명)

	반 수	화예 학생(중국, 대만)	총 학생 수
한성중고등학교	21	693	765
한성소학교	26	259	685
영등포소학교	6	36	68
인천중고등학교	6	X	231
인천소학교	10	X	275
군산소학교	7	7	70
온양소학교	7	7	18
수원소학교	10	7	150
강릉소학교	7	11	40
평택소학교	7	1	12
충주소학교	3	5	21
원주소학교	6	6	40

주: 이 표는 화교학교들이 대만정부에 교과서를 신청할 때 각 학교 스스로 작성한 학생의 인원 정보로 만들었다. 인천에 있는 화교학교는 표를 작성할 때 총 학생수만 기재해서 실제적으로 화예 학생의 인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외의 다른 화교학교는 부산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

여기서 화예 즉 중국, 대만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이외의 학생은 대부분 한국 학생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표에 의하면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은 각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화교학교의 50퍼센트 가까이 화예 학생인 반면, 나머지 지방 소재의 화교학교는 대부분 한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 수원 등 규모가 있는 학교 이외의 지방 화교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각 화교학교에 한국 학생의 입학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학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국 학부모들은 원한다면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입학 전에 한국 정부에게 단속을 받는 경우 학교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는다. 한성 소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입학하고자 하는 한국 학부모가 많아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화교 자녀와 유치원부터 보낸 한국 자녀들에게 우선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중학교의 경우, 이전에는 한국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화교소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몇 년 전부터 한국학생 입학의 문을 열었다.

화교학교로 한국 학생의 입학은 외국인학교 관리 담당자의 암묵적인 허락으로 오래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연이어 터진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학교 입학 편법이 크게 부각 되었다. 입학조건에 맞지 않은 채 입학을 하거나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입학을 신청한 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에 대한 요건이 점점 엄격해져 화교학교 내 한국인 학생도 단속을 받기 시작하였다. 신문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외국인학교의 입학 절차와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법을 정하여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인원의 제한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할 경우 명확한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다(한국일보, 2012·12·12).

2013년 4월 검찰·교육청에 의한 화교학교 내 한국인 학생의 적발은 연이어 나타났다(연합뉴스, 2013·4·10). 영어권 외국인학교의 경우 입학 자격 문서의 위조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는 반면 화교학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발적 전학을 요구하는 것에 그쳤다. 다만 전학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학생의 취학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는 학생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진학이나 취직에 있어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고를 받은 학생들 중 장래 한국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학교로 전학을 하였고 계속 화교학교를 다녀서 장래 외국으로 진학할 계획을 가진 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외국인학교 내 입학 조건이 되지 않는 한국학생에 대한 단속으로 화교학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규모가 비교적 큰 몇 개의 화교학교는 학교 내에 일종의 평생학원을 세워서 이곳에 한국학생의 학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합법적으로 입학 조건을 맞추지 못한 한국학생을 받아들이는 변통(變通)의 수단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가의 발전정책에 의해 외국인학교의 입학 조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학교의 입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화교학교의 특수성과 역사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화교학교는 기타 언어권 외국인학교와 설립목적 및 역사 배경이 현저히 다르고 학비에 있어서 열 배 가량의 차이가 드러난다. 화교학교의 학비는 1년에 3,4만원으로 한국의 일반 학원비보다 더 저렴하고 입학 자격도 큰 제한이 없다. 이는 교육을 통해 계급 간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정부의 우려가 화교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외국인학교를 제재하는 것과 같이 화교학교 내의 한국 학생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재는 학생의 학비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화교학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Ⅶ. 한국학부모의 화교학교 선택

한국 학부모들은 정부의 입학 제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교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들이 조기유학, 외국인학교, 한국 공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단을 비교하여, ‘중국어’라는 글로벌 문화자본의 획득이 가장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화교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중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의 진학 방향, 미래의 진로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 전략 등을 감안한 다층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연구하는 과정에 화교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의 학부모는 학력이 높은 편이고 외국에서 유학한 적 있거나 중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삶 속에서 외국어의 중요성과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녀에게 일찍부터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다.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화교학교로 보내는 유형으로 보면 조기유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윤희(2012)는 한국 학부모들이 싱가포르의 조기유학을 ‘2년 프로젝트’, 혹은 ‘이삼이삼 유학’ 즉 초등학교 2-3학년 때 와서 2-3년 만에

마치는 유학 방식의 공식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상상의 미래의 궤적에 따라서, 이들의 특수한 시간적 및 공간적 요소를 이용하여 언어자본을 획득한다(강윤희, 2012: 222-233).

한국 학생들이 특수한 공간·시간적 제한을 받고 화교학교를 다니는 방식은 싱가포르 단기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한 조기유학과 비슷한 전형으로 발견된다. 많은 한국 학생들은 화교초등학교에서 2-3년만 다니고 바로 화교학교를 떠난다. 현재의 화교초등학교 학교의 학생 수를 관찰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한국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화교학교가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을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학원처럼 이용될 수 있으며 자녀가 언어를 습득하기 좋은 시기에 단기간으로 국내에서 조기 언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화교학교의 경우 한국에서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학년이 진학하기 전, 일찍 화교학교를 그만두고 일반학교로 전학을 해서 한국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진학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자녀들에게 중국어 조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화교소학교에 몇 년 진학 시킨 후, 언어적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자녀들을 재진입 시키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단기적 전략으로 화교학교를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 화교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한국 학생의 학부모는 주로 두 가지 생각을 한다. 하나는 입시 위주로 한 공교육의 과잉 경쟁을 도피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 대학을 보내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등 중국권 대학으로 진학시키려는 것이다. 한국 학부모들은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화교학교의 입시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선호하였다. 화교소학교를 선택한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비교적 열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보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의 압박이 없는 화교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의 학생들보다 학습량이 적어진다.

화교학교는 교육의 개혁이 없이 아직도 체벌이나 암기 등 구시대적인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화교학교의 자원 부족, 교사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들의 교육, 화교 선생님 특유의 사투리와 가난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공부 의욕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국어의 실력도 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업을 중국어로 진행하는 화교학교를 7,8 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통역이 필요한 학생을 현지관찰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중국어 실력 저하의 문제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인의 경우가 많아진 화교 가정의 자녀들에서도 발생한다. 오히려 한국 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재촉과 자신의 노력으로 학교 내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한 학생이 많고 누가 화교인지 한국인지分辨할 수 없는 정도로 중국어를 잘 하는 한국 학생도 많다. 이는 화교학교에서도 제대로 학습을 한다면 한국 학생도 중국어를 잘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VII. 결론

본 연구자는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을 조명할 목적으로 화교 민족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화교학교와 한국 사회의 상호 관계 그리고 역으로 학교로 유입된 한국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화교학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학술계에서 한국 화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한국 학생의 유입 현상을 밝히고 현재 화교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일부 한국 학생들은 정부의 단속에 적발되어 진입양난의 처지에 서게 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화교학교의 한국학생 유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여 한국 학생을 단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부 화교학교는 한국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단속으로 한국 학생을 모두 전학시킨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단속을 받은 한국학생이 화교학교에서 떠나면 학교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화교학교를 다니던 한국 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이방인 취급을 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정부는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 유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눈을 감아 주었지만 곧 정책을 수정하여 한국 학생의 입학을 단속하였다. 화교학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화교학교는 끊임없이 정부 정책의 제한에 시달려야 하고 결국 학교운영이나 교육 비전을 설계하는 데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화교에 대한 탄압과 억압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

라 현재에도 화교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100년의 역사가 넘는 화교학교는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한국정부의 정책과 단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화교학교의 역사는 결국 화교의 생존사와 같고, 화교학교의 존폐는 화교집단의 지속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다. 최근 그 수가 감소하는 화교학교는 오랫동안 화교집단을 지탱해 온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한국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화교학교의 유지 및 존속이 소수자인 화교에 대한 존중이자 공생의 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교학교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인정에 도달하는 교섭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윤희. 2012.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에의 재구성: 싱가포르 한국조기유학생들과 동방가족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20(1): 87-118.
- 김종영. 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한국사회학》 42(6): 68-105.
- 권준희. 2002. “재일조선인 3세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조선학교 출신 ‘조선 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언문. 2013. “화교학교로의 한국 학생 유입 현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석미령. 1995. “한국 화교교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정란. 2007. “한국의 학교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육사회학연구》 17: 89-113.
- 이덕수. 2012. “구술자료를 통해 본 한국화교의 역사적 경험과 화교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한. 2009. “‘두 개의 중국’과 화교정책의 분기: 반동회의(1955) 전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재. 2012. “한국의 대화교정책과 배제의 역학.” 《중국어문학논집》 72: 399-430.
- 이정희. 2007.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107-129.
- 정은주. 2012. “한국의 중국인 디아스포라 형성과 국민교육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년 가을 포럼 발표문(미간행).
- 최셋별. 2003. “한국사회에서의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대학생들의 영어학

습실태와 영어능력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1: 5-21.

王恩美. 2012. “華僑學校在韓國的法律地位變化與生存策略(一九七八至二〇一〇).” 《思與言》 50: 147-190.

林坊玲. 2009. “不一樣的路: 馬來西亞關丹非華裔家長選擇華小的原因及困難.” 國立暨南國際大學碩士論文.

張兆理. 1957. 『韓國華僑教育』. 海外出版社.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ung, Eun-Ju. 2012. “Learning to be Chinese: The Cultural Politics of Chinese Ethnic Schooling and Diaspora Construction in Contemporary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3. 11. 11. 접수; 2013. 11. 22. 수정; 2013. 12. 12. 채택)

Phenomenon in the Entrance of Korean Students into Huaqiao Schools

Yen-Wen Tu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henomenon in the entrance of Korean students into Huaqiao schools (Chinese ethnic schools) by examining the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chools and the choices made by the Korean parents. Korean Huaqiao faced a lot of discrimination in Korea, therefore their educational system persisted in ethnic schooling which strongly emphasizes their identity.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such phenomenon through on-site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Huaqiao school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ho chose Huaqiao school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deals with the Huaqiao schools under the foreign school system. The same rules for accepting Korean students applied to the Huaqiao schools just like other foreign schools. Besides, due to a recent scandal regarding the acceptance of Korean students by other foreign schools, the Huaqiao schools became a subject of strict supervision. Although there are government supervision and restrictions, Korean parents still send their children to the Huaqiao schools because of their eagerness towards global cultural capital and the emergence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is context, Huaqiao schools are used as means of pursuit of Chinese (language) global cultural capital, as expedient for domestic study abroad at early ages, and as replacement of Korean public education. However, the stagnant educational system by the Huaqiao schools does not satisfy the Korean parents' expectations. Huaqiao schools are located in the blind spot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Korea, Taiwan and China) and are free from influences of other countries' educational reform hence continue to carry out the old-fashioned educational format. There exist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Korean parents' enthusiasm towards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the reality of the schools, hence in conflict. Although recently the number of Huaqiao schools have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Huaqiao schools have played a role in preserving the Huaqiao community and are part of the Korean history. The question regarding Huaqiao schools' continuation is also very closely and importantly related to the continuation of the Huaqiao commun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gard the Huaqiao schools as means of cultural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foreigners.

Key words: Korean Huaqiao, Huaqiao school, foreign school, ethnic schooling, Huaqiao policy, educational choice, global cultural capital, study abroad at early ages, replacement of public education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저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인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6. 본 학회의 기금
 -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훈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4권 제2호

인쇄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철우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4 No.2 2013

Articles

Chinese Immigration Policy and Foreigner Administration System

■ Yuntae Kim, and Soungcho Ye

Multicultural Family's Dissol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ocusing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Jeollabuk-do

■ Shinkyu Park, and Ayoung Jo

Phenomenon in the Entrance of Korean Students into Huaqiao Schools

■ Yen-Wen Tu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